도 국장급 인사 폭 윤곽

도가 7월1일자 정기인사를 예고하면서 국장급 승진인사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57~1958년생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면서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장급은 이달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한만수 도의회 사무처장과 최원식 건설교통국장, 김보현 기획관 등 3명이다. 여기에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최기호 녹색국장, 전영하 환동해본부장이 명예퇴직을 해 6자리가 공석이 된다.

도는 국장급 일부 자리의 외부 충원 여부 등 인사방침이 확정돼야 정확한 승진자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의장단 선거가 끝난 뒤 신임의장단과 협의해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국장 후임에는 박병진 동계올림픽본부 건설추진단장이 물망에 올라 있다. 지난해 7월 인사를 앞두고 건설교통국장 최종 후보 2명에 이름을 올린데다 올해 초 준국장급인 건설추진단장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최선희 치수과장과 박재명 건축과장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환동해본부장은 수산직이 바통을 이어갈 경우 김성삼 수산정책과장이 유력하다. 녹색국장은 이번에는 행정직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지자체 공사수주 해주겠다" 억대 금품 받은 50대 조사중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52·정선)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선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1억원 가량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정선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경찰은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장은 9일 오후 1시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 참석해 건설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

"다단계 하도급, 안전사고·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대 추진

남양주 지하철 붕괴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 논란 커져
을지로위원회 법안 재발의

건설근로자 '적정 임금' 고시
'삭감' 사전 차단 장치 마련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8일 열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줄이고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또 건설근로자가 받을 '적정임금'을 정해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깎이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안도 발의된다.

두 법안 모두 19대에 발의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최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가 이슈화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건산법 개정안은 모든 공공공사의 공사비 20% 이상에 대해 원청사인 종합건설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보다 직접시공 대상과 비율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직접시공제는 현행 건산법시행령에서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시공 비율도 30억~50억원 미만 공사는 1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현행 직접시공제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을지로위원회는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72조원의 건설공사가 2단계 이상의 다단계 하도급 외주화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은 안전사고, 시공품질 저하, 근로자 처우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안을 발의하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남양주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안전과 직결된 건산법 개정안을 법제실 심사를 마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직접시공 의무비율은 19대 때 발의한 법안과 동일하겠지만, 노무비 비율 관련 조항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때 이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직접시공 비율을 정하면서 직접시공 공사비의 30% 이상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장비사용이 늘어나 노무비가 하락하는 추세인 건설현장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을지로위원회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건설근로자가 받을 '적정임금'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건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적당한 임금을 산정해 고시하는 게 핵심이다. 원청사는 적정임금을 지급하려 저가수주 경쟁과 불법 하도급을 지양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건설산업도 발전할 것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미국의 Prevailing Wage 제도를 모델링한 것으로, 사실상 건설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기자 ysys@

"부적격 업체 퇴출 위해 300억 미만까지만 적용"

종합

직접시공의무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업역 간 온도차가 느껴진다.

종합건설업계는 부적격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데 일부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확대는커녕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시공의무제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일정비율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고, 발주자가 공사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서면 승낙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의무비율은 △50억미만~30억원 : 10% △30억미만~10억원 : 20% △10억미만~3억원 : 30% △3억원 미만 : 50%다.

우선 종합건설업계는 직접시공제도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직접시공 의무비율도 △10억원 미만 : 50% 이상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40% 이상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30% 이상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20%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직접시공제도 일종의 규제다. 원도급업체 재량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가장 경제적인 시공 패키지를 구성해 공사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 건설사 등 부적격업체들이 수주한 공사를 불법으로 전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기능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직접시공제가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적용범위 및 직접시공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직접시공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부실업체 퇴출 기능을 살리려면 3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체가 모든 공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기 위해선 대규모 비용이 들어간다. 해당 공종에 회사 역량을 투입해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공사를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종합건설사 사이에도 온도차는 있다. 대형건설사는 비교적 유연한 반면 중소형건설사는 신중하다. 하지만 최근 하도급 관련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기자 중소형건설사 사이에서도 이럴 바엔 차라리 직접시공을 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도급 물량 축소 타격 오히려 전면 폐지해야"

전문

전문건설업계는 직접시공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시공하면 하도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종합건설사들이 직접 시공을 하기 위해 고용확대가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반면 중소 협력사는 일감이 없어져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19대 국회 때 발의됐던 건산법 개정안에 직접 시공하는 공사비율 30% 이상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공현장에선 크레인, 포클레인, 레미콘 등 장비를 이용하므로 옛날처럼 노무비가 많지 않다. 노무비가 직접시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기기 힘들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원도급-하도급업체 공사계약은 민간자율 사항이지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의 일방적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하도급법 제8조).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때에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급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는 무엇인가? 도급계약의 해제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도급인이 먼저 손해를 배상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법문은 마치 도급인이 먼저 손해를 배상한 뒤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지만, 그 손해배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도급인이 먼저 손해를 배상한 뒤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도급인에게 해제권을 인정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도급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일방적 계약해제권을 부여한 것에 더하여 과실상계까지 인정한다면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수급인에게 심히 균형을 잃은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社說

직접시공제 획일적 확대 실효성 없다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업계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현행 법령엔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원도급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돼 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해 서면으로 승낙할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직접시공이 확대되면 부실공사와 안전, 체불임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법안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공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직접시공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설업 특성을 전혀 도외시한 처사다. 건설업은 수주를 근간으로 한다. 도급받은 공사를 최상의 목적물로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도급사가 공사를 따면 가장 효율적인 시공패키지를 구성해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모든 공사를 원도급사가 직접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전문공사는 업종별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혀 무시한 채 무조건 원도급사가 공사를 직접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게다가 실효성도 없다. 원도급사가 모든 공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기 위해선 대규모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투입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해당 공종에 노하우를 가진 업체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계약은 민간 자율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모든 공사에 직접시공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 원도급사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직접시공이 꼭 필요한 곳도 있다. 소규모 공사가 대표적이다. 이들 공사에 무자격자가 시공을 맡을 경우 면허대여, 불법전매 등 편법시공이 판칠 수 있다.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직접시공제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일정 규모 미만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진접선 복선전철 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직접시공 확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 사고는 직접시공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다.